

금요기출회 해설

[23 9월 (10~13) 사회 지문 - 유류분]

[금요기출회]

매주 금요일 기출 한 지문 해설이 업로드 됩니다. (독서 or 문학)

금요기출회는

지문 내용의 완벽한 이해, 상세한 문제 해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권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을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했을까 등
시험장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해설입니다.

빨간색은 생각의 과정

파란색은 추가 코멘트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감각]

문제부터 읽기

빠르게 하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2등급 이하 비추천

- 10번
: 유류분권, 상속, 재산 등이 있으니 사망 후에 상속인이 갖게 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판단 가능.
- 11번
: 물건, 반환 방법 등이 있으므로 물건을 어떻게 반환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겠구나.
- 12번
: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 그럴까? 유류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되겠다.
- 13번
: 사례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물건과 B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물건의 시가는 을이 A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③ A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⑤ A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1문단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그렇구나.

지문을 읽을 때는, 우선 납득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 공짜로 처리한 경우에는 돌려줘야 될 수도 있겠네?

본인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을 바꾸는 과정도 할 수 있다면 하는게 좋습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네. 넘어가자.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공짜로 준 사람이 피상속인이구나.

2문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 정의네. 표시해 두고, 아빠가 공짜로 안줬으면 내가 받을거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보장한다는 소리구나.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 자녀 한명이면 절반. 구체적 수치니까 표시해두고~

구체적 수치는 언제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 내가 상속받은거랑 아빠가 공짜로 준거 가치가 유류분 0%

본인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은 연결되는 다른 개념이 나왔을 때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구만.

3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받았으면 유류분이 깎이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유류분 - 이미 상속 = 부족액.**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 **항상 돈 X.**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원래는 통으로 줘야되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 **아예 못주면 돈으로 줘야 하는구나.**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 **그렇구나.**

4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 **이제부터 물건 얘기.**

범주가 변화하는 것도 읽는 과정에서 잡아야 합니다.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물건이 받을 돈보다 비싸면 해당 비율만큼 받을 수 있구나.**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 **소유권이 지분.**

5문단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그러게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유류분의 취지가 뭐더라... 왜 만들었을까? 암튼 상속 당시면 죽었을 때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
 해야 한다.
 → 받은 사람이 잘했으면 받았을 때 기준으로 부족액.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속 당시는 무상 취득 당시 이후인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지분은 무조건 죽었을 때 가격 기준 계산.

문제

판단 과정 또한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0번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자한테 하는거 아냐? 당연하겠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선지는 바로 지문으로 돌아가 확인하기 보다는 우선 다음 선지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며? 나가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망하고 상속 개시되고, 행사할 수 있으니 상속 안되면 주장 안되겠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무상만 해당하니까 그렇겠지.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의사와 무관하게라 적혀 있으니 맞네.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지분으로 반환받는다며? 나가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상속자 지분이 커지는데? 나가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그렇지 않나?
확실하지 않은 선지 또한 우선 판단을 유보하고 다음 선지를 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원칙이 물건이고, 합의는 둘다 인정해야 되니까 취득자가 싫으면 물건으로 반환되겠네. 일단 이게 답이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 일부 반환했으면 끝인데?

해제

11.

③ 4문단의 지분 부분과 많이 헷갈렸을 것이며, 저도 헷갈렸습니다...
4문단의 발문을 보시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능해야 이루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셈이죠. 선지에서는 '반환할 수 없게 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범주입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찾으면...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3문단 밑에서 4번째 줄) 불가능할 경우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12번

- ①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류분 취지가 뭐더라? 상속인들이 기대한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네.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다라... 당시 가격과 원래 이익과 관련된게...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무상 처분 안한게 원래 이익이니까 ②번이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물건과 B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물건의 시가는 을이 A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③ A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⑤ A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가졌을 때는 300, 상속 당시는 700의 가치네. 노력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네.

관련 없으면 상속 당시니까 $700+100 / 2 = 400$ 의 유류분.

근데 100 얻었으니 부족액은 300이고, 관련 있으면 200의 유류분이고 부족액은 100이겠네.

- ① 오케이.
- ② 지분이니까 상속 당시 시가. 700에서 유류분 부족액인 300을 지분으로 볼 수 있겠네.
- ③ 오케이.
- ④ 지분인데 왜 분모 3이야. 나가
- ⑤ 음... 계산 어렵다. 4번 틀렸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해제

13.

⑤ 하다가 계산이 맞지 않아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답을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해설해야 하니 설명하자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읽어보면,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입니다. B 물건입니다. 함정이죠.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